

『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「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- 「수도법」에 따라 위원회명칭과 위원회 기능 개정
 - 구미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⇒ 구미시수돗물평가위원회
 - 위원회의 기능
 -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
 -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
 -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
- 근거법조항 변경
 - 수도법 제19조의 2규정 ⇒ 「수도법」 제30조
- 위원 수 확대
 - 9인 이내 ⇒ 15명 이내
- 간사
 - 시장이 임명 ⇒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

4. 관련근거

- 수도법 제30조
-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(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)

5. 검토의견

-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를 「수도법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본 위원회를 활성화 하기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